

「평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위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 2. 10(월) 평창군수(재무과장)

나. 회부일자 : 2014. 3. 6(목)

다. 상정일자 : 2014. 3. 6(목) 제199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재무과장 최원규)

가. 제안이유

○ 당초 재산세 본세가 5만원 이하인 경우 한꺼번에 부과·납부(7월)함

2011년 지방세법 개정 후, 5만원 초과 납세자가 증가하자 2회납부

(7월, 9월) 대상자도 증가하여 납세자들의 불편함을 야기함.

이에 지방세법 개정(2013.1.1)과 관련, 평창군 군세 조례 일부를 개정

하여 납세자들의 납부편의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지방세정 운영을

기하고자 함.

○ 이와 함께 조문 가운데 명확하지 않은 문구와 용어를 정비하여

법령해석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제

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를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변경한다.

- 제8조제1항 중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군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이내에 관할”을 “이내에”로 변경한다.
- 제11조제1항 중 “관할 군수”를 “군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이내에 관할”을 “이내에”로 변경한다.
- 제16조 중 “5만원”을 “10만원”으로 변경하여 납세의무자의 납부편의를 도모한다.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홍금숙)

-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2013년 1월 1일 개정됨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부과·납부방법**에 있어 한꺼번에 부과·납부하는 금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변경하고 기타 문구와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의결》

7. 소수의견 요지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건의사항 : 없 음
- 기타 특별한 사항 : 없 음

【붙임】 평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군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를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군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이내에 관할”을 “이내에”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관할 군수”를 “군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이내에 관할”을 “이내에”로 한다.

제16조 중 “5만원”을 “10만원”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2항 전단 중 “이내에 관할”을 각각 “이내에”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이내에 관할”을 “이내에”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이내에 관할”을 “이내에”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과세기준일까지 관할”을 “과세기준일까지”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정확한 지 여부를”을 “정확한 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